

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

의안 번호	5-139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07. 9. .

제 출 자 : 김정자 의원 외 5인

□ 개정이유

「지방자치법」이 2007. 5. 11. 전부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 조문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 조문인 「지방자치법」 제82조 및 제83조를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로 함.(안 제1조)

동두천시조례 제 호

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지방자치법」 제82조 및 제8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(이하 “정원”이라 한다) 및 분장사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법」 제90조 및 제91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
《관계법령 발췌서》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90조(사무처 등의 설치) ①시·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,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.

②시·군 및 자치구의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, 사무국·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.

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 및 직원(이하 이 절에서 “사무직원”이라 한다)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.

제91조(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명) ①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한다.

②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무직원 중 별정직·기능직·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지방의회 사무처장·사무국장·사무과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.